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상수도공급 취약지역에 원인자부담금 면제 등 〉
■ 강명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631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상수도공급 취약지역에 원인자부담금 면제 등	2

I. 제안경위

2026년 4월 27일 강명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4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면지역 등 상수도 미공급 취약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비용 부담 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군에 설치된 면지역으로서 가뭄 피해 우려 등 상수도공급 취약지역인 농어촌 면지역의 수도시설 신설·증설 등에 대하여는 상수도 설치비용 등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상수도공급 취약지역에 원인자부담금 면제 등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군에 설치된 면지역 중 상수도공급 취약지역의 수도시설 신설·증설 등에 대한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생략)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군에 설치된 면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수도공급 취약지역인 농어촌 면지역의 수도시설 신설·증설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②·③ (생략)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현행법 제70조 및 제71조¹⁾에 따라 수도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도공사나 시설 신설·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 제65조²⁾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³⁾로 정하고 있음.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

부과요건 또는 대상	납부의무자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수도공사 비용발생 원인제공자(수도시설 신·증설 원인 제공자 포함)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경우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자 또는 행위자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에는 총 4만 5,234건에 대해 3,919억 6,200만원이 부과되어 건당 평균 부과액은 867만

1) 「수도법」

제70조(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2)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이나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 조례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면제하고 있음. (참고,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감면 규정 사례)

원이었으며, 3,703억 700만원(징수율 94.5%)이 징수되었음.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부과			징수		차이		징수율
	건수	금액(A)	건당 평균금액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B/A)
2025	45,234	391,962	8,665,207원	44,748	370,307	486	21,655	94.5
2024	49,097	376,358	7,665,600원	47,845	362,282	1,252	14,076	96.3
2023	59,315	519,186	8,753,030원	58,093	515,006	1,222	4,180	99.2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런데, 농어촌 면지역 등 상수도 미공급 취약지역의 경우 건당 평균 867만원에 달하는 부담금이 주민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뭄이나 수원 고갈 상황에서도 상수도를 원활히 공급받지 못하는 등 지역 간 물 복지 양극화가 초래된다는 지적이 있음(제안이유 참조).

이에 개정안은 상수도공급 취약 농어촌 면지역의 수도시설 신설·증설 등에 대한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함으로써, 취약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인 물 복지를 실현하려는 취지임.

현행법 제75조⁴⁾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

4) 「수도법」

제75조(국고 보조 등) 국가는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낡은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경우 또는 해수담수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도시시설을 설치하거나 낡은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경우 또는 해수담수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노후상수도정비(지역자율계정) 사업⁵⁾에 국고를 보조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⁶⁾에 따라 상수도의 설치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노후상수도정비' 사업에 이미 대규모 국고를 보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농어촌 취약지역 수도시설 신설·증설 사업 역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국고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영역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구밀도가 낮고 관로 연장이 길어 주민 부담이 큰 취약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① 부담금 면제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보다는 법률에 감면 근거를 폭넓게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②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사무에 대한 국고보조 확대, 국가

5) 노후상수도정비(지역자율계정) 사업(2031-306)

- 노후된 상수도(상수관망, 정수장)을 정비하여 누수를 저감하고 국민에게 안전하며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여 안정적으로 공급
- 2025년 결산: 3,700억 4,100만원, 2026년 예산 3,515억 7,100만원

6)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 아. (생략)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재정 부담 증가, 유사 입법 확산 가능성 등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기획예산처는 상수도의 설치 및 관리는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지방상수도의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⁷⁾임.

문 의 처
02) 6788-5548

7) 반면,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요금현실화율 74.4%) 등을 고려하여, 농어촌 면지역의 원인자부담금 면제에 따른 상수도 설치비용 등의 부담금은 국가에서 전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참고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감면 규정 사례

※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감면대상
가평군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교육시설 : 공립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구미시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면
남원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산업단지 인 ·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수도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공익사업
양구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5. 국가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상수도 공급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공익사업
용인시	1. 시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2. 무료 및 실비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3. 실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주차시설, 물류센터, 창고시설 등)의 면적. 다만,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 시설 중 제4조제3항제6호의 기타시설에 해당되는 공장시설 (건축허가서상 주용도가 공장으로 표기된 경우를 말한다) 50퍼센트 감면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중 용인시가 직접 개발하거나 용인시 또는 용인도시공사에서 출자하는 회사(법인)가 개발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전액 감면
진안군	<면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5. 국가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상수도 공급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	감면대상
	6. 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한 미급수 마을단위 주택에 상수도를 신규로 공급할 경우의 급수관로 설치공사비. 다만, 배수관으로부터 150m이상 급수관 설치가 요구되는 독립주택은 제외 7. 기타 군수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공익사업 <감면>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3.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시로 정한 자
천안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촌지역 주민
평택시	1. 주민등록상 시에 실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단, 주거용 건물에 한함) : 면제 2. 마을상수도의 광역상수도 공급 전환사업(단, 주거용 건물에 한함) : 면제 3. [별표 1]의 “그 밖의 시설”중 종교집회장, 집회장, 관람장 등 상시사용시설이 아닌 경우 : 100분의 40 감면